

장애인 독립생활

정보모음집

숨은 2014년  
vol.3  
독립 찾기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2014년 숨은 독립찾기 vol.3

장애인독립생활정보모음집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장애인 독립생활

정보모음집

숨은 2014년  
vol.3  
독립 찾기

(사)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 목 차

머릿글 / 5

어려운 용어 설명 / 7

### I. 지원제도 신청하기 / 11

1. 장애인 등록하기 / 12
2. 활동지원제도 / 21
3. 주거지원 / 27
4. 금전관리 / 34
5. 보조기구 / 42
6. 이동지원 / 48
7. 취업/창업 / 56
8. 의료지원 / 60
9. 출산/양육 / 67

\*부록 : 알아두면 좋아요 / 69

### II. 독립관련 이슈 / 76

1. 탈시설 / 77
2. 발달장애인법 / 86
3. 활동보조서비스 / 90
4.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무제 / 96

## 「숨은 독립 찾기

### — 독립생활 정보모음집 vol.3」을 발행하며

장애여성 인권운동을 하고자 1998년도에 창립한 장애여성공감은 창립초기부터 장애여성의 '독립'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장애여성공감의 부설 기관인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은 장애여성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지기반과 지원체계의 마련을 위해 2005년에 개소하였습니다. [숨]센터는 「장애여성 동료상담」, 「활동지원 서비스제공」, 「장애여성 독립을 위한 정책 제안 등 권익활동」, 「장애여성 독립생활 이념 확산 및 실천을 위한 교육」, 「장애여성 주거권 확보를 위한 지원」, 「장애여성 독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장애여성 독립생활 활동가 양성」, 「독립생활 관련 정보 제공」등 장애여성이 독립적인 주체로써 존중되는 삶을 지향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한 기존의 사회인식과 지원체계 안에서 장애여성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존의 사회는 물론, 장애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장애운동단체나 장애 관련 기관과 시설 안에서조차 장애여성의 문제는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더구나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한 기존의 독립생활지원체계 안에서 장애여성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에서는 장애여성들이 독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각기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보들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필요 시 바로바로 얻기가 쉽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숨은 독립찾기-독립생활 정보모음집」를 발행하였습니다.

「숨은 독립찾기-독립생활 정보모음집」은 기존에 나와 있는 독립정보자료집들과 달리 정보들을 단순히 나열만 하는 형태를 벗어나 장애인의 독립 전·후 과정별로 필요로 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구분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은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에 올해와 작년에 이어서 「2014년 숨은 독립찾기-독립생활 정보모음집 vol.3」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숨은 독립찾기-독립생활 정보모음집 vol.3」은 독립생활 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나아가 장애인의 독립생활에 관련된 이슈와 쟁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독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책과 이슈, 그리고 그에 따른 쟁점과 의제를 살펴봄으로써 독립생활 정책의 방향과 지향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숨은 독립찾기-독립생활 정보모음집 vol.3」이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살아가는데 있어서 작더라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어려운 용어 설명

### 1.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지원자격 중,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 " 는 표현에서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 1)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국민의 소득 및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수준 등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하는데요. 2014년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원/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 2)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각의 합을 말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의 금액과는 다르다는 점, 확인하세요.

다음의 표와 같이 계산할 수 있는데요, 좀 복잡하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내인 경우에는 ■ 기초생활수급자로, 120% 이내인 경우에는 ■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얼른 신청하세요.

## 2. 전국가구월평균소득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살펴봅시다.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은 가족관계로 연결된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인 지난 1년간 총 소득액 대비 한 달 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의 소득은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인의 소득)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면,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합니다.

## 3.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지원을 받기까지 기관 방문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려면 힘드시죠?

혹시나 빼먹은 서류 때문에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은 최대한 줄여야지요. 기관을 방문할 때는 미리 전화 문의를 해서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신분증을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신분증이 없으면 서류를 다 준비하셨다고 해도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접수조차 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래 조건에 맞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진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 것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기관에 들를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늘 가지고 다니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장애인 콜택시 이용 등의 일상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복지카드를 발급받는 방법도 이 책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 4. 직계와 직계존/비속

직계란,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존속은 윗사람, 비속은 아랫사람이란 뜻이죠.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고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	딸, 아들, 손녀, 손자, 증손자녀, 고손자녀
* 제외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며느리, 사위

## 5. 동 주민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방문해야 한데, 동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동 주민센터는 예전의 동사무소와 같은 곳이에요. 신분증에 적힌 동 이름 확인하시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동 주민센터”라고 검색해보시면, 해당 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검색이 어려우시다면 다산콜센터 ☎02-120 에 전화 혹은 문자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 I. 지원제도 신청하기

---

1. 장애인 등록하기
  2. 활동지원제도
  3. 주거지원
  4. 금전관리
  5. 보조기구
  6. 이동지원
  7. 취업, 창업
  8. 의료지원
  9. 출산, 양육
-

## I. 장애인 등록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 하신다면, 우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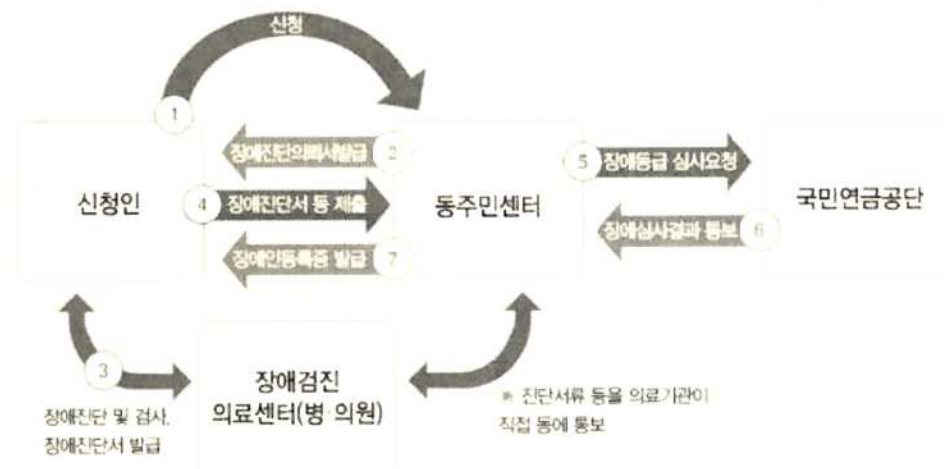
일단 증명사진 2매와 신분증을 준비하시고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가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 온라인신청의 경우

증명사진과 장애인 진단서는 방문 혹은 우편 발송으로 제출하고, 신청 절차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의 과정이 조금 복잡합니다만,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되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 > 등록절차

#### ① 등록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 ②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가 접수되면 동주민센터는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③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 장애인 등록 신청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②,③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장애심사 및 등급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을 심사합니다.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기간 :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등급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 > 장애등급 조정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등급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등급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 2) 온라인 신청

### 1 장애인 정보입력

- 회원의 경우 회원정보 자동입력 / 비회원의 경우 기본인적사항 자동입력 됩니다.

한글성명	홍길동	수정
주민등록번호	123456 - ●●●●●●	
주소	주소검색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기본주소	일반 100 번지 1 호 통 반	
특수주소	월드컵아파트 2002 동 4 호	
예)월드컵아파트 2002동 4호		
전화번호	02 - 1234 - 5678	
장애의 부위 및 상태	안면장애	입소시설명

2 세대주(보호자) 정보입력 - 신청인과 동일하면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성명	홍길동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123456 - ●●●●●●	장애인과의 관계 - 본인 검색
주소	주소검색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기본주소	일반 100 번지 1 호 통 반	
특수주소	월드컵아파트 2002 동 4 호	
예)월드컵아파트 2002동 4호		
전화번호	02 - 1234 - 5678	

3 복지요구내용 입력 - 원하는 복지사항을 복수개 선택하세요.

복지요구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input type="checkbox"/> 학비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수당 등 <input type="checkbox"/> 취업알선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수교육 <input type="checkbox"/> 자금대여 <input type="checkbox"/> 기타
--------	--

4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카드정보를 입력

- 신용, 직불카드 : 모든 정보 입력 / 기타(일반 장애인등록증) :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신용 <input type="radio"/> 직불 <input type="radio"/> 기타		
영문성명	hongildong		
직장명	행정안전부	부서/직위	공공 / 주임
휴대폰	010 - 1234 - 5678		
장애인	주소검색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직장주소	기본주소 일반 200 번지 1 호 통 반		
특수주소	무궁화 오피스 동 호		
예)월드컵아파트 2002동 4호			
직장전화번호	02 - 5678 - 1234		
성명	홍길동	영문성명	hongildong
주민등록번호	123456 - ●●●●●●	장애인과의 관계	본인 검색
직장명	행정안전부	부서/직위	공공 / 주임
휴대폰	010 - 1234 - 5678		
보호자	주소검색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직장주소	기본주소 일반 200 번지 1 호 통 반		
특수주소	무궁화 오피스 동 호		
예)월드컵아파트 2002동 4호			
직장전화번호	02 - 5678 - 1234		

⑤ 대금결제 정보 입력 - 대금청구지 자택, 직장 중 선택 - 대금결제일 및 비밀번호 입력

대금청구지  자택  직장  
 대금결제일  1일  5일  11일  17일  
 비밀번호     카드비밀번호입니다(숫자4자리)

⑥ 자동이체 신청정보 입력 (원할 경우)

자동이체 신청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⑦ 장애인등록증을 수령할 배송지 및 반송지를 자택, 직장, 주민센터 중 선택

배송지  장애인 자택  보호자 자택  
 장애인 직장  보호자 직장  장애인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반송지  장애인 자택  보호자 자택  
 장애인 직장  보호자 직장  장애인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⑧ 구비서류로 장애인진단서 및 사진을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장애인등록 처리가 가능함

※ 온라인 장애인등록신청 제약사항

- 장애인진단서, 사진 2매를 원본으로 제출
- 근무시간(9시~18시) 이후 접수된 건은 익일 접수하여 처리

⑧ 장애인진단서 원본

제출방법  우편  방문  
 제출안내 → 신청 후 나의민원처리결과와 접수증에서 기관정보(주소,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출력 후 함께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접수증) -> 동봉(접수증, 구비서류)  
 구비서류 증명사진 2매  
 제출방법  우편  방문  
 제출안내 → 신청 후 나의민원처리결과와 접수증에서 기관정보(주소,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출력 후 함께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접수증) -> 동봉(접수증, 구비서류)

## 1-1 장애진단/검사 비용지원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장애진단과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아래의 조건에 맞는 경우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 장애진단비용

장애진단비용의 청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청구해주면 편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기준비용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 5천원
직접청구방법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신청을 할 경우 장애인진단서발급비용을 직접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급방법	시,군,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
제출서류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통장사본 1부 (생계급여 통장)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2) 검사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재진단 비용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 5만원 이상 초과금액에 대하여 최대 10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 10만원 이상 초과금액에 대하여 최대 10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 단 직권 재진단대상자에 한해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 지원방법

검사비를 자비로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액을 직접 계좌에 입금해줍니다.

## 1.2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등록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음



### ■ 장애인복지카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있음



## 1) 방문접수

<p>&gt; 방문신청</p>	<p>-장애인등록증 등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재 신청자 포함)은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p> <p>-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별지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p> <p>-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우체국, 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에서 선택</p> <p>-사진은 따로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으로 대신할 수도 있음</p> <p>※ 장애인등록증 등은 협약에 의해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 관리됨</p>
<p>&gt; 자료전송 및 제작</p>	<p>-동 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p> <p>-조폐공사는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p> <p>※ 장애인복지카드는 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p> <p>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p>
<p>&gt;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p>	<p>동 주민센터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보호자 등 가족)에게 발급</p>

## 2) 온라인 신청

**장애인증명서발급 신청**

장애인 인적사항	성명	1 신청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 - ●●●●●●
	주소	2 주소검색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보호자와의 관계	3 검색 남편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신청인 홍길순
	주민등록번호	123456 - ●●●●●●
기타사항	장애인증명서발급 신청 입니다	
수령방법 선택	수령방법	5 검색 방문수령(후불)
	수령기관선택	6 검색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내용	장애종별	시각장애1급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록번호	11122211
	용도	의료보험증발급
	제출처	종로구청
발급부수	1 부	
신청일	2009 년 06 월 08 일	

수령방법을 방문수령으로 선택하는 경우만 입력 가능합니다.

## 3) 등록증/복지카드 재발급

아래의 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복지카드 등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절차는 위의 신규발급 절차와 같습니다.

### ➤ 재발급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다가온 경우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2. 활동지원제도

2007년 제도화된 활동보조서비스는 2011년에 와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독립에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또한 활동보조 현장 안에서 장애인의 주체성 확보는 매우 핵심적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그리고 이용자의 가족이나 주변인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살펴야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량  
 삶의 형태에 따른 추가급여  
 지방자치단체별 특성파악  
 본인부담금 확인

이때, 급여량 체계와 결제시스템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주체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용자로서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지키면서, 활동보조인과 관계 맺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해요.

처음에는 활동보조인을 구하는 것부터가 힘들고 지치실거예요. 1-2년 정도 멀리 내다보시고 꾸준히 이용자 교육, 활동보조 코디네이터와의 상담 등을 받아보세요.

### ➤ 지원조건

만 6세 ~ 만 65세 미만 1-2급 장애인  
 만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경우에만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 월 한도액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와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활동보조 일반수가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을 병기 표시)

-기본급여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기본급여			추가급여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	구분	추가급여
1등급	380점 ~ 470점	919,000원 (약 107시간)	최중증 1인 가구/ 최중증 취약가구	2,163,000원(253시간)
2등급	320점 ~ 379점	738,000원 (약 86시간)	중증 1인 가구/ 중증 취약가구	171,000원(20시간)
3등급	260점 ~ 319점	556,000원 (약 65시간)	출산가구	684,000원(80시간)
4등급	220점 ~ 259점	374,000원 (약 43시간)	자립준비	171,000원(20시간)
			학교생활	86,000원(10시간)
			직장생활	86,000원(1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가족의	171,000원(20시간)
			직장,학교생활	624,000원(73시간)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163천원)과 가족의 직장,학교생활(624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 부담율	(단위: 원)			
		4등급 (374천원)	3등급 (556천원)	2등급 (738천원)	1등급 (919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50%이하(237만원 이하)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전국 가구 100%이하(474만원 이하)	6%	22,400	33,300	44,200	55,100
평균 소득 150%이하(710만원 이하)	9%	33,600	50,000	66,400	82,700
150%초과(710만원 초과)	12%	44,800	66,700	88,500	94,500
	15%	56,100	83,400	94,500	94,500

\* '14년도 4인 가구 기준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94,5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 부담율	(단위: 원)				
		86천원	171천원	624천원	684천원	2,163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50%이하(237만원 이하)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전국 가구 100%이하(474만원 이하)	2%	1,700	3,400	12,400	13,600	43,200
평균 소득 150%이하(710만원 이하)	3%	2,500	5,100	18,700	20,500	64,800
150%초과(710만원 초과)	4%	3,400	6,800	24,900	27,300	86,500
	5%	4,300	8,500	31,200	34,200	108,100

### 시급

구분	현행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원
② 심야(22시 ~ 6시)에 제공하는 경우	10,260원
③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원

### > 활동지원 예시

가능한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의 예시입니다.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수급요건

구 분	수급 요건
기본급여	장애등급재심사에서 1급을 받은 자로 인정점수 220점 이상~445점 이하 ○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919,000원(약 107시간) - 2등급 738,000원(약 86시간) - 3등급 556,000원(약 65시간) - 4등급 374,000원(약 43시간)
① 최종증 1인가구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수급자 1인가구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2인 이상이라도,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군(현역병) 입대, 장기 해외체류(원양어업, 해외 취업등), 실종신고,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수급자가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1인가구'로 인정
② 중증1인가구	인정점수 400점 미만인 수급자 1인가구
③ 중증 장애인가구	만7세 ~ 만74세의 가구원이 모두 1.2급의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④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가구가 아닌 경우로 수급자를 제외하고 만6세 이하의 아동, 만75세 이상의 노인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
⑤ 출산가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활동지원 비수급자인 경우에 한함)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 예정 또는 최근 6개월 전 출산한 경우
⑥ 학교생활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초·중·고·대·대학원·특수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 법령에 따른 정규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4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⑦ 직장생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인 경우 제외)인 경우
⑧ 자립준비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전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인정조사 방법

- 공단은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 정신기능의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합니다.
- 장애인 당사자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 또는 가족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일상생활 동작영역	1. 옷 갈아입기	① 0, ② 10, ③ 20, ④ 40	7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목욕하기	① 0, ② 10, ③ 20, ④ 30	
	3. 식사하기	① 0, ② 30, ③ 60, ④ 90	
	4. 잠자리에서 자세 바꾸기	① 0, ② 10, ③ 15, ④ 20	
	5. 옮겨 앉기	① 0, ② 10, ③ 15, ④ 20	
	6. 걷기	① 0, ② 10, ③ 20, ④ 30	
	7. 화장실 사용하기	① 0, ② 10, ③ 20, ④ 30	
	계	260점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영역 ①(만15세 이상)	1. 전화 사용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15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물건사기	① 0, ② 10, ③ 15	
	3. 식사준비	① 0, ② 10, ③ 20, ④ 30	
	4. 집안일	① 0, ② 5, ③ 10, ④ 15	
	5. 빨래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15	
	6. 약 챙겨 먹기	① 0, ② 10, ③ 15	
	7. 금전관리	① 0, ② 5, ③ 10	
	8.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① 0, ② 3, ③ 5, ④ 10	
	계	125점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영역 ②(만6세 이상 15세 미만)	1. 전화 사용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20	6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물건사기	① 0, ② 10, ③ 20	
	3. 약 챙겨 먹기	① 0, ② 10, ③ 20	
	4. 금전관리	① 0, ② 10, ③ 20	
	5.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① 0, ② 5, ③ 10, ④ 20	
	6. 본인 물건 관리하기	① 0, ② 15, ③ 25	
	계	125점	
장애특성 고려영역	1. 휠체어사용	① 0, ② 15, ③ 30	1개 항목의 점수만 산정한다.
	2. 청각기능	① 0, ② 20, ③ 40, ④ 60	
	3. 시각기능	① 0, ② 20, ③ 40, ④ 60	
	4. 인지기능	① 0, ② 30, ③ 60	
	5. 정신기능	① 0, ② 30, ③ 60	
	계	60점	
사회환경 고려영역	1. 사회활동 참여	① 0, ② 5, ③ 10	4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위험상황 대처능력	① 0, ② 3, ③ 5	
	3. 장애인보조기구 사용능력	① 0, ② 3, ③ 5	
	4. 단어나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	① 0, ② 3, ③ 5	
	계	25점	
총점		470점	4개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조사항목 및 인정점수 산정방법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급여 수행의 제한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인은 활동보조인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범위 비교표

활동보조사업	활동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li> <li>• 직계혈족(아버지, 딸 등)</li> <li>• 형제.자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li> <li>• 직계혈족(아버지, 딸 등)</li> <li>• 형제.자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li> <li>• 배우자의 직계혈족(시어머니, 장인 등)</li> <li>•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li> <li>• 배우자의 직계혈족(시어머니, 장인 등)</li> <li>•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li> <li>•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등)</li> <li>•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 외사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혈족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계혈족(형제.자매, 조카, 삼촌 등)의 배우자(형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처남댁, 시누 등)</li> </ul>	

### 3. 주거지원

#### 3-1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는 주택을 분양 혹은 임대할 때, 무주택세대주 장애인에게 특별공급을 우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조건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알선절차

- ①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 ↓
- ②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 ↓
- ③ 주택공급자가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을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신청기간을 정하여 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접수
- ↓
- ④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약 3배수)를 선정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검색 자료를 요청
- ↓
- ⑤ 회신된 주택소유여부 조회결과를 토대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장애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 ↓
- ⑥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 3-2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을 실시합니다.

#### > 지원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면서 장애등급이 1급 혹은 2급인 자로서, 전세주택 입주신청 당시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세대주  
소득수준이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2인 이하 가구는 7천만 원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8천만 원 이하

#### > 지원기간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 > 신청기간

매년 2월~3월

#### >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 > 신청서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 >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 선정기준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균등배분, 잔여가구 전체 고득점 순

#### > 선정절차

신청접수 → 현지확인 → 고득점순 입주대상자 선정(자치구) → 무주택조회(국토해양부) → 지원대상자 확정 및 공고(4월 경)

#### > 문의

자치구 사회(가정,생활)복지과, 동 주민센터

### 3-3 저소득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중증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 지원조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등급이 1~4 급 장애인가구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주택소유주가 허락한 임대주택(자가주택 포함)

#### > 주요내용

집수리 사업 주요내용은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입니다.

#### > 우선 고려사항

대상가구 선정시 우선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1~2급) 정도 높은순

소득수준 낮은순

주택개조의 시급성

#### > 선정방법

대상가구 선정방법은 자치구에서 예비대상가구로 선정한 가구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서 현장실사 후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상가구를 확정합니다.

#### > 신청시기

주택개조 대상가구 신청은 매년 초(2,3월경)에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3-4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혹은 중증장애인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위의 사업에 신청할 수 없으시다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비장애인도 지원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장애인에게 혜택이 있기도



합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이 서로 다르므로, 본인에게 더 적합한 대출 방식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 1)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b>대출조건</b>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람 ①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35세 이상 1년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②연간소득액이 4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4천5백만 원)인 무주택 세대 ③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람 ①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②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원,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6천만 원, 기타 4천만 원 ③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신 분
<b>대상주택</b>	임차전용 85m2(25.7평) 이하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제외)	임차전용 85m2(25.7평) 이하 주거용 주택(오피스텔 제외)
<b>대출한도</b>	최고 8천만원 이내/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억원 만 20세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 이내/ 1.2억원 이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600만 원 한도 (3자녀 이상 세대는 6,300만 원)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3,500만원 한도 (3자녀 이상 세대는 4,200만원) 기타지역 2,800만원 이내 (3자녀 이상세대는 3,500만원 이내)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b>대출금리</b>	연 3.5% (국민주택운용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 가구는 0.2%,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 가능 * 대출금리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연 2.0%(신용 3.0%) 신용대출(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은 1% 금리가산 *대출금리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b>신청기한</b>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는 2개월 전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b>대출기한</b>	2년 이내 일시상환(3회 연장 가능, 최장8년까지 연장 가능)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b>중도금상환수수료</b>	없음	없음

- 제출서류**
-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
  - ②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 ③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④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⑤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 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⑦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⑧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 경우에 따라서는 더 필요할 수 있음

-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전(월)세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②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③ 건물(토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④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⑤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⑥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⑦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3-5 전월세지원센터

그밖에 전월세에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한 전월세 지원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지원센터에서는 법률 상담과 금융 및 대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1577-3399
인터넷상담	☞http://jeonse.lh.or.kr
방문상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 보금자리주택홍보관 내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3-6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독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퇴소준비부터 지역사회자립까지 단계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지원조건</b>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 신청(우편 또는 방문)하면, 현장심사 등을 거쳐 자립생활이 가능한지 판정을 받습니다.
-------------	---

지원내용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입주자 선정하고 연결합니다.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지원절차	1단계 자립생활 체험홈 → 2단계 자립생활가정 → 3단계 지역사회 자립
문의	홈페이지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 <a href="http://happy.welfare.seoul.kr">http://happy.welfare.seoul.kr</a>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2-2 충정빌딩 4층
전화	☎ 02)724-0871~4

### 1)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 체험홈은 1단계 자립생활 적응훈련 단계로서 자립 희망 생활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체험공간과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거주기간	6개월~24개월
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 주요내용	① 일상생활관리 : 건강관리/금전관리/의식주 관리 ② 지역사회 관계 : 동료상담/대중교통 익히기/지역사회 기관이용(은행, 관공사, 동주민자치센터 등)/지역주민과의 교류 ③ 직업탐색 : 직업훈련 연계/근로시설 방문/이력서 쓰기 및 면접법 익히기 등 ④ 주거공간 제공 : 1인1실 (단독주택, 아파트 등 1개 주택에 3~4인 거주)

### 2) 자립생활가정

자립생활가정은 2단계 자립생활 실천단계로서 사회적응훈련을 마친 체험홈 퇴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반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거주기간	기본 2년(1년씩 3회 연장가능, 최장 5년까지 거주가능)
지원내용	자립생활가정 설치 및 개보수, 리모델링, 입주자 선정, 입 퇴거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립생활가정 운영관리 및 기준 마련, 전문가 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등.
입주인원	1주택당 3~4명 거주
입주자선정	입주자 심의 위원회의 심의, 생활시설퇴소 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우선 입주

### 3-7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위한 주거개선

내 집 마련을 하긴 했는데, 집안 환경 자체가 지나치게 비장애인 위주로 맞춰져 있어서 생활하기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개선 사업에 지원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차상위 이하 장애인 가구로서 세대주(세대원)의 장애등급이 1~4급이고, 자가 소유주택 또는 소유주가 개조 허락한 임대주택에 거주
신청기간	2월, 6월
선정기준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
사업내용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핸드레일, 키높이 싱크대 설치, 경사로설치,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 4. 금전지원

장애여부에 따라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이 아닌, 가구의 소득과 부양할 수 있는 자의 유무 조건에 맞추어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정 조건이 꽤 까다롭죠? 그러므로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의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4-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100%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원/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2) 부양의무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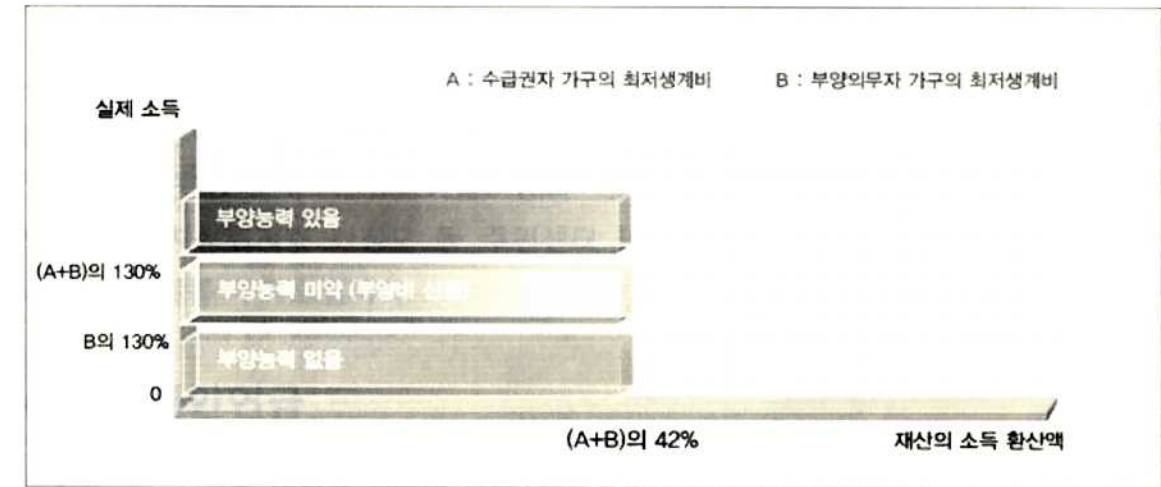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 예외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단, 금융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단, 금융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능력 있음으로 처리

### >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부양비=(부양의무자 실제소득-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부양비 부과율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자, 보장시설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 > 보장절차

우선 주거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하시고, 이후에 추가 제출서류를 준비한다거나 실태조사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 ① 급여신청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동도 저소득가구 보장외 가능)  
제출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② 조사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조사

#### ③ 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경과 통지서)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④ 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애급여, 의료급여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⑤ 확인조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 보장중지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 급여중지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4-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한부모가정의 경우 130%)인 경우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양곡 할인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의료급여) 등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등의 여러 법에 의해서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도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 4-3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장애인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연금대상인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부모,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분이라면 시도해볼만 합니다.

☎ [www.bokjiro.go.kr/pension](http://www.bokjiro.go.kr/pension)

### > 지원조건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중증장애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선정기준액 : 단독수급 870,000원, 부부수급 1,392,000원(2014년 기준)

### >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

(2014년 7월 ~ 2015년 3월 기준)

소득계층	연령	계	급여액(원)		
			기초급여	부가급여	서울시 추가지원
기초수급자	18~64세	310,000	200,000	80,000	30,000
	65세 이상	310,000	0	280,000	30,000
기초수급자 (보장시설)	18~64세	230,000	200,000		30,000
	65세 이상	100,000	0	0	30,000
차상위계층	18~64세	300,000	최고 200,000	70,000	30,000
	65세 이상	100,000	0	70,000	30,000
차상위초과	18~64세	220,000	최고 200,000	20,000	0
	65세 이상	40,000	0	40,000	0

- \*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 부부인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200,000원 → 160,000원).
- \* 현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이고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에게 부가급여 70,000원이 지급됩니다.

### >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명 필요),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중증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받아 제출)

②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상시근로소득은 1인당(본인 및 배우자) 월 45만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은 가구별 2,000만원까지 공제
- 주택 등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 1억 800만원까지 공제

③ 자산조사 결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시·군·구의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④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인

연금 수급 및 급여액이 결정되면 연금 신청일이 속한 월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됨

## 4-4 경증장애수당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경증장애 : 3~6급(3급 중복장애는 장애인연금 대상)

## > 지원내용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월 3만원을,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

## > 신청 및 지급절차

①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②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경증장애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

- 경증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됨(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의 급여 전액,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 급여의 50%)

-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됨

## 4-5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국내에는 다양한 장애인 조세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잘 알고 활용하는 게 좋겠죠? 궁금한 점 생기면 국세청 고객센터(<http://call.nts.go.kr>, ☎1588-0060)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1) 소득세 경감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 공제
보험료공제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
교육비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비과세저축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 암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 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 2) 증여세 경감 혜택

장애인이 직계손·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회사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 3) 상속세 경감 혜택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4) 징수유예 혜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해줍니다.

### 5)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기부금공제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5% 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장애인 보장구,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용 특수 제작물품
개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관세 감면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지방세 면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5. 보조기구 지원

내 몸에 알맞은 보조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과 제도를 소개합니다. 보조기구는 장애인의 일상과 생활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니깐요.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에서는 보조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보조기구 저변확대의 과정을 거쳐 개개인의 장애특성에 따라 보조기구를 소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원가능한 보조기구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도 소개되어 있구요.

### 1) 중앙보조기구센터 ■ <http://www.knat.go.kr>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상담, 방문상담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 02-901-1953~8 보조기구 상담 및 평가 문의

☎ 02-901-1953~8 업소 품목 등록제 문의

### 2) 장애인보조기구 콜 센터

☎ 1670-5529(보조기구)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처 및 금액, 장애인보조기구 센터, 공적급여 신청 방법 등. 장애인 보조기구 업소, 품목 등록제에 대한 문의

다음으로, 장애인보조기구데이터베이스는 일상생활, 전자정보접근, 이동 등 장애인의 생활 및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과 욕구에 맞는 보조기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되고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 무엇인지, 제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쉽고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3) 장애인보조기구데이터베이스 ■ <http://rtdb.nrc.go.kr>

회원가입을 할 경우 MYDB 에 자신의 관심 보조기구를 등록해 원할 때 마다 찾아보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 4) 보조기구 지원 사업의 종류 및 현황

사업명	신청대상자	지급품목	신청기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이면서 시각, 청각장애(등급무관),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1~2등급) (+근육병증 등 포함)	지체, 뇌병변, 심장-목창 예방용 방석,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지체, 뇌병변-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자세보조용구, 기립훈련기,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시각-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청각-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시각신호표시기 기타교부품목	해당 관할센터에서 대상여부,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십시오.(행정 구역 체계에 따라 읍 또는 면사무소)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급사업	장애인 (시각, 청각, 지 체, 언어장애 등)	의료급여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장애인  차상위 또는 국민건강 보험가입자 이면서 장애인	해당 관할센터에서 대상여부,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십시오.(행정 구역 체계에 따라 읍 또는 면사무소)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보험	차상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 언어장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상위일 경우 품목별 기준액 범위 내 8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80%를 부담함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 보조기구 지급사업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요보호아동, 국가유공자등	스크린리더, 독서확대기, 음성출력기, 점자정보단말기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 입력보조기, 특수마 우스 및 키보드등 약 50개 품목 기기구입가격의 80%를 지원하며 본인부담 20%	02-1588-2670 한국정보화진흥원
산재의료서비스 재활보	산재해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통되는 재활보조기구 (의자, 보조기, 기타보장구) 포함 의자, 보조기, 구두, 휠체어, 가발, 욕창	1588-0075 산재병원 근로복지공단

조기구 지급		예방방석, 집노기 이동식 리프트등	
보철구 지급사업	전산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인	상지의지-어깨관절, 팔, 손의지 등 하지의지-엉덩이관절, 넓적다리, 무릎관절의지 등 기타-전자의수, 목발, 인공후드, 독서확대기, 등 총 39종 254개 품목 보조기구 상한액까지 무상지원	<상담>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신청> 보훈처, 보훈(지)청 <접수>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등록장애인 중 근로자 직업훈련생 또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	정보접근-점자프린터, 확대독서기 등 작업기구-테이블, 특수작업의자 등 의사소통-신호장치, 골도전화기 등 사무보조-음성메모기, 수화기홀더 등 총 33개 품목 사업주에게 임대하고 고용해제시 기기는 공단에 반납	1588-1519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학 생지원	사업에 따라서 교육 대상, 소득 수준 등 이 다르므로 사업별로 정확한 확인 필요. (유초중고 외에도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있음)	(별도문의)	053-757-8000 특수교육보조공학 지원시스템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품목은 사업별로 신청 대상, 품목, 신청 접수하는 기관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기관별, 사업별로 지급되는 품목과 관련 세부 지침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신청기관에 확인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이트가 일시적 오류 또는 주소 변경 등으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경우 중앙보조기구센터에 연락주세요. ☎1670-5529

## 5-1 보조기구 교부

### > 지원조건

장애종별 ■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 > 우선순위기준

1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 재가장애인

5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 제한조건

1 ■ 201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 보건복지부 타 교부사업은 현재 행복e음을 통해 중복확인 가능하며, 타부처 교부사업 지급 및 신청 내역은 장애인보조기구통합DB 개통 이후 조회 가능('13.2.4일 예정)

4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가능

### > 지원절차

① 지원조건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세요.

▷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② 동 주민센터에서 진단을 의뢰해야 하는지 결정하고 알려줍니다.

▷ 장애인진단의리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을 내립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을 의뢰하지 않고 교부가 진행됩니다.

교부 등을 해야 할 장애인보조기구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이나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인 경우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가 그 장애인보조기구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의 가벼운 것인 경우

▷ 진단을 의뢰하기로 결정된 경우 의료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진단서를 작성하여 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또는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수리)의뢰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를 발급합니다. 다만, 직접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③ 교부 의뢰서와 신분증을 업체에 제출합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에게 교부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 장애인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의뢰받은 장애인보조기구 제조·수리업자는 제출한 의뢰서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하거나 수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거나 수리한 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조·수리비 등의 시가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 5-2 서울보조공학서비스센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보조공학서비스센터에서는 한빛재단과 연계하여 상담 및 평가, 보급 및 대여, 맞춤제작 및 개조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 서울보조공학서비스센터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문의	홈페이지	http://www.seoulats.or.kr 화면 왼쪽의 메뉴에서 기기 검색 및 상담 문의가 가능
	위치	서울시 강동구 고덕1동 317-24 (고덕동길 199) (고덕역 2번 출구, 명일역 3번 출구)
	전화	1599-0420, 02)440-5891~5
	팩스	02) 440-5897

### 한빛 A-Tech(한빛재단 맞춤보조공학센터)

문의	위치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314 한빛재단 1층 (6호선 효창공원역 1번출구)
	전화	1599-0420, 02)715-6100
	팩스	02) 715-6105

### > 보조기구 임대 서비스

대상	서울시내 거주 등록장애인
보조기구 시험적용	상담, 평가를 거쳐 선정된 보조기구를 실제 환경에서 사용 최대 2주
보조기구 임대	시험적용 후 1인당 최대 3점 동시임대 가능 보조기구 구입가 총액이 1,000만원 이내 물품 최소 3일 ~ 최대 1년
임대 문의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1599-0420 서울보조공학서비스센터 02) 440-5891~5 한빛A-TECH 02) 715-6100

### > 보조기구 맞춤 제작 및 개조 서비스

서울보조공학서비스센터	-기존보유제품에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개조제작 제공 -나무로 제작가능한 벤치, 휠체어 랩보드 등 제한적 제작 가능 -기타 철골구조물등의 제작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연계한 서비스 제공
한빛 A-Tech	-기존보유제품에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개조제작 제공 -나무, 철제등을 이용한 제한적 제작 가능 -전자제어장치를 탑재하지 않은 광범위한 영역의 Low-Tech제품 제작 가능

## 6. 이동 지원

### 6-1 대중교통

#### 1) 장애인 콜택시 ☎1588-4388 | <http://calltaxi.sisul.or.kr>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승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중교통에 비하면 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또한 이용자의 수에 비해 콜택시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발하려는 시간보다 일찍 연락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콜택시는 전화 접수와, 인터넷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화 접수는 2시간이내에만 예약이 가능한 반면에, 인터넷 접수는 다음날의 택시 예약도 가능하고 본인의 인터넷접수 내역을 확인 및 취소하기도 편리합니다.

> 운행시간	주간 주간 - 07:00 ~ 22:00 (15시간) 야간 야간 - 22:00 ~ 익일 07:00 (9시간)
> 이용대상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편한 1, 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를 이용하는 1, 2급 중증장애인 ※ 서울시에 유입된 타시도민 및 외국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만 이용 가능합니다.
> 운행지역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인천국제공항 ※ 출발지는 서울시내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이외 출발지 배차 불가)
> 이용방법	전화접수 ① 1588-4388로 콜전화 ② 휠체어 사용 유무, 출발지, 도착지, 예약 시간을 말해줌 인터넷접수 ①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사이트( <a href="http://calltaxi.sisul.or.kr">http://calltaxi.sisul.or.kr</a> )에 회원가입 ② 로그인 후 화면 위쪽에서 '인터넷 콜접수 > 인터넷 콜접수하기'를 클릭 ③ 고객님의 지켜주실 사항의 내용에 동의 후, 원하는 서비스의 접수하기 버튼을 클릭 (원하시는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④ 고객정보를 체크하고 출발지/도착지 정보 입력 ⑤ 화면 위쪽에서 '인터넷 콜접수 > 콜접수 내역보기'를 클릭하면 콜접수 내역을 확인 가능 ⑥ 콜접수를 취소하기 원할 때에는 콜접수 내역에서 취소 버튼을 누름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5Km까지 1,500원 (일반택시 2Km까지 2,400원) • 추가요금 : 5Km부터 10Km까지 Km당 300원, 10Km 이상 Km당 35원 • 톨게이트 비용 이용자 부담

> 문의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 ☎02-6321-4240 시설관리공단 ☎02-2290-6510
> 불편사항신고처	콜센터 ☎1588-4388 시설관리공단 ☎02-2290-6510

#### 2) 장애인 심부름 택시 ☎2092-0000

시각 및 신장장애인의 민원대행 업무, 출퇴근, 병원이용, 외출 귀가 등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운행시간	24시간
> 이용대상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 이용요금	일반택시요금의 35% 기본요금 5km까지 2,000원 주행요금 1km당 200원 시간거리병산요금 100초당 100원
> 이용전화	2092-0000
> 불편사항신고처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과(3707-8471)
> 문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3707-847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시지부) 2092-0000

#### 3) 저상버스 <http://bus.go.kr> | <http://m.bus.go.kr> (모바일)

☎1577-0287

콜택시뿐만 아니라 저상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저렴하지만 배차간격이 너무 길죠?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럴 땐 인터넷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버스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를 탈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상버스가 도착하면 버스에 타겠다는 의향을 분명히 밝혀줘야 합니다. 그래야 버스를 인도 쪽으로 바짝 주차시켜 주시거든요. 탑승 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버스기사 분께 활동보조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리프트 발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신 후 뒷문으로 탑승하시면 됩니다.